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사업자가 홍수,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로 모듈러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의 제목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를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해 모듈러형 주택(건축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미리 제작하고, 이를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듈러형 주택의 확보·설치·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구호기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3(<u>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u>) ① ~ ③ (생략) <신 설>	제23조의3(<u>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u>)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해 모듈러형 주택(건축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미리 제작하고, 이를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듈러형 주택의 확보·설치·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구호기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